



제6회 대회 서면심사 방법 및 주요 예시 논점

심사 방법

1. 심사 서면

▣ 민사 분야

- 총 77개팀 서면 제출
- 총 10쪽 분량 : 소장 또는 답변서(10장 이내)

▣ 형사 분야

- 총 57개팀 서면 제출
- 총 25쪽 분량 : 변론요지서(15장 이내), 의견서(10장 이내)

2. 심사 절차

▣ 심사 기준 확정

- ▣ 평가단의 평가(1개 답안을 2명의 평가위원이 평가) 후 검증단의 검증을 추가로 실시

3. 심사 기준

- ▣ 참가팀에 대한 절대평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경연분야별 본선 진출 상위 36개팀의 선정을 위한 상대평가에 적합한 기준 설정

▣ 평가단의 평가방법

- 경연분야별 주요 예시 논점 : 별지 '주요 예시 논점' 참조
- 전체적으로는 제시한 논거의 설득력 여하 및 작성한 서면의 작성 목적



충실도 여하에 따라 우열 결정

- 주요 예시 논점에 대한 언급시 기본점수를 부여하고, 설득력 있는 논거가 제시될 경우 가점 부여
- 논리 구성에 있어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법리를 전개하는 경우, 전체적인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논점을 흐리게 하는 경우 등의 논리 전개는 감점 처리
- 평가방법
 -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4단계(A, B, C, D) 상대평가 방식 채택
 - 각 경연분야별 B 이상 36개팀이 본선 진출
 - 비율표(예시)

민사			형사			표기점수
등급	비율	팀수	등급	비율	팀수	
A	16.7%	12	A	18.5%	8	90점
B	33.3%	24	B	36.9%	28	80점
C	33.3%	27	C	30.8%	14	70점
D	16.7%	14	D	13.8%	7	60점
합계	100%	77	합계	100%	57	

- 서면 지연 제출, 분량 초과, 서면양식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대회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 감점 처리

■ 검증단의 검증방법

-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평가단과 협의하여 재평가
 - 평가위원 간 평가점수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
 - 합격선 주변(B와 C)의 서면



- 재평가지 기준

- 평가단의 평가방법을 토대로 하여 평가기준 재확인
- 합격선 주변의 서면에 대하여는 주요 예시 논점 누락 여부, 논거의 충실도, 대법원 판례의 인용 적부 및 이해도, 논리적 흐름, 용어 사용의 정확성 여부 및 명백한 오류 유무, 서면 구성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의 우열 재확인

- ▣ 순위 결정

- 최종점수 순 [끝]



[별지]

주요 예시 논점

[민사 문제]

1. 형식적 기재사항 등
 - 소장: 청구취지, 청구원인, 서면의 구성(청구권원별 소목차) 등
 - 답변서: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,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, 서면의 구성(예상되는 원고의 주장요지, 청구권원별 소목차) 등
2. 기초적 사실관계의 정리
3.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도청구
 - 요건사실 적시
 - 임대차계약의 당사자(임대인): 임대차계약의 체결경과, 내용 및 주택법과 그 시행령, 관리규약의 해석에 따른 논리 구성
 - 그 밖의 요건사실 적시
4.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청구
 - 요건사실 적시
 -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: 주택법과 그 시행령, 관리규약의 해석에 따른 논리 구성(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3다17774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, 지지하는 논거를 추가하거나 위 판결 내용을 반박하는 논거 구성 등)
5. 기타
 - 각 청구권원별 관계: 선택적 또는 주위적/예비적 청구

[형사 문제]

1.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감금의 점
 - 가. 주장 및 쟁점
 - 나. 검토
 - 1) 감금죄의 '감금'의 의미
 - 2) '공동하여' 의미



-
- 3) 정신보건법 규정
 - 4) 이 사건의 경우
 - 입원 업무에 관여한 자
 - 입원 동의 절차
 - 입원 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
 - 피고인들의 관련성
 - 감금 해당 여부 등
 2. 피고인 김처형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감금의 점
 - 가. 주장 및 쟁점
 - 나. 격리실 격리 지시의 감금 해당 여부
 - 다. 법령 또는 업무에 의한 정당행위 법리
 - 라. 정신보건법 및 격리지침 등 관련 규정 검토
 - 마. 이 사건의 경우
 - 장고을의 병력 및 경력, 최근 행태
 - 피고인과 장고을의 면담까지의 과정 및 그 내용
 - 장고을의 입원 또는 격리과정에서의 행태
 - 피고인 김처형의 보호사들 폭행 예상 가능 여부 등
 3. 피고인 김처형의 모욕의 점
 - 가. 주장 및 쟁점
 - 나. 구성요건해당성
 -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인지
 - 국가기관이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
 - 다.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 등
 4. 피고인 황통해의 강제집행면탈의 점
 - 가. 주장 및 쟁점
 - 나. 황수진의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는지
 - 라. 황수진의 권리가 강제집행면탈의 재산에 해당하는지
 - 마. 피고인 황통해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(두 회사의 동일성 여부) 등
 5. 피고인 황통해 음주측정거부의 점
-



가. 주장 및 쟁점

나.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

다. 임의동행의 적법성 여부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(끝)